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26 - 67호

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(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[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]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'폐문부재'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4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인

1. 건 명 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(*과태료 금액 과다부과에 따른 재부과건)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㈜주성종합건설 (현장: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공사)	110111-2******	서울 광진구 능동로 157, 101호	남**	1,000,000원 (2023.12월분 851,500원 미납)	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
				1,000,000원 (2024.1월분 1,657,500원 미납)	